

## 5~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

### 주52시간제 도입과 우리 사회의 변화

-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,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.
- 그리고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,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고, 기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.
  - \* 법 시행 : 300인 이상·공공기관('18.7) → 50~299인 ('20.1) → 5~49인('21.7)
- 먼저 제도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\*('20.1월), 탄력과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습니다.\*\*('21.4월)
  - \* (기존)①재해·재난 → (추가)②인명보호·안전 확보, ③돌발상황, ④업무량 폭증, ⑤연구개발
  - \*\* ①3~6월 탄근 신설, ②연구개발 선근 정산기간 확대(1→3월), ③특별연장근로 건강 보호조치 의무화('21.4.6. 시행, 5~49인은 '21.7.1. 시행)
- 행·재정적으로는 1:1 컨설팅 제공, 조기 단축기업 인건비 지원, 각종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
-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  -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\*,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습니다.\*\*
    - \* 연간근로시간: ('17) 2,014 →('18) 1,986 →('19) 1,978 → ('20) 1,952 (상용5인 ↑, 사업체노동력조사)
    - \*\* 52시간 초과 취업자 비율: ('17) 19.9% →('18) 16.8% →('19) 14.8% → ('20) 12.4% (경찰조사)
  -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(사회문화환경 분야) 1위로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.

## 5~49인 기업의 준비 상황

□ 이제 7월이면 5~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

- 작년 12월 고용부의 조사와, 금년 4월 고용부·중기부·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
- 두 조사에서 모두 80%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“준수 중”이라고 응답했고, 90% 이상이 7월부터는 “준수 가능”하다고 전망했습니다.

\* '20.12월 (5~49인 1,300개소 표본조사, 고용부)

- 주52시간제 준수 중 82.4% / 준비 중 8.5% / 준비못함 9.1%
-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90.2%(제조업 77.9%) / 불가능 9.8%

\* '21. 4월 (5~49인 1,300개소 표본조사, 고용부·중기부·중소기업중앙회 공동)

- 주52시간제 준수 중 81.6% / 준비 중 10.7% / 준비못함 7.7%
-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 93.0%(제조업 82.4%) / 불가능 7.0%

□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하여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

##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

①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, 정책지원,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.

- 다만, 제조업의 “준수 가능”하다는 응답은 80%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또한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\*거나,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

\* '21.4월 설문조사 시 유연근로제 “인지도” 조사 결과(중복응답)

- ①탄근 79.8% ②선근 47.7% ③3~6월 탄근 24.3% ④재량근로 22.9% ⑤모두 모름 16.7%

- 이에,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5~49인 기업의 경우 금년 7월,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,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① 성수기·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\* 탄력근로제: 일이 많은 주(일)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(일)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(주40시간)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(보완입법으로 3~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신설됨)

② 실물 제품은 물론 SW·게임·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여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\* 선택근로제: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,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(보완입법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최대 3개월까지 활용 가능)

③ 또한, 2020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, 시설·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\*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\* 특별연장근로: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

④ 특히, 전체 5~49인 사업장의 95%\*에 해당하는 5~29인 기업은 '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.

\*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(노동부, 2019): 5~49인 사업체 783,072개 中  
5~29인 742,866개 (94.9%), 30~49인 40,206개 (5.1%)

○ 다만,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「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」을 최대한 가동하여 안내하겠습니다.

- 즉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·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, 교대제 개편, 유연근로제 도입,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:1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\* (공인노무사) '19년 1,146개사, '20년 2,600개사, '21.6월 1,006개사(진행중)  
(지방노동관서) '19년 4,123개사, '20년 1,496개사, '21.6월 2,227개사(진행중)

○ 그간, 1.2만여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는데,

- 지방의 한 식품 제조·판매업체의 경우 명절 선물세트 제작 수요로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어려움을 해소하였고, 향후 3~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- 발주처의 발주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,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주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

○ 또한, 근로시간 문제는 업종별로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'업종별 설명회'를 지역단위로 확산하여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서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.

\* <중앙단위> 유튜브 생방송(3.26) → 업종별 설명회(5.10.게임, 5.17.농축업, 5.21.디스플레이, 5.26.뿌리·조선, 5.27.섬유) → 돌봄 등 확대 예정

<지역단위> 지방노동관서별로 지역 경제인단체와 함께 영세제조업·벤처스타트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업종 중심 업종별 설명회 추진(6월~)

② 두 번째,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\* 한편,

○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,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.

\* (일자리 함께하기) 주52시간 준수 + 신규채용 →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~2년간 인건비 월 40~80만원 +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 지원

\* '18년 1,175명(24억), '19년 5,547명(233억), '20년 12,056명(335억), '21년 진행중(예산 389억)

○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

-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,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~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~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\*이나 정부조달 가점, 정책금융 우대 등\*\*도 지속하겠습니다.

\* (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) 주52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(50명 한도) 지원, '20년 82개사, 1,669명(20억), '21년 진행중(예산 46억)

\*\*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, 관공서 공휴일 전환기업에 확인서 발급(고용부) → 정부 조달 가점, 정책금융 우대,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(소관부처)

③ 세 번째,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.

○ 중소기업 혁신바우처\*,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\*\*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,

\* 제조 소기업에 경영기술전략·규제대응 컨설팅 또는 시스템·시설구축 등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('21년 526억)

\*\* 중소기업 등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, 고도화 등 지원('21년 4,002억)

- 아울러,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<sup>1)</sup>을 신설하며,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<sup>2)</sup>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<sup>3)</sup>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.(중기부)

\* 1)·3) 보증비율 85 → 90% 상향, 보증료 감면 -0.3%

2) 업력 7년 미만 대상 60억원 한도, 대출기간 10년 이내, 기준금리 -0.3% 우대

○ 또한, 인력난이 심한 SW업종의 경우는 지난 6.9일 발표한 「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책」을 착실히 추진하여 인력 mismatch를 해소\*하고, 식품기업 청년인턴십\*\* 등 부처별 지원 사업을 통해 인력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.(고용부·농식품부 등)

\* '21~'25년에 8.9만명 추가양성 → 총 41.3만명 양성

\*\* 식품·외식기업 청년 인턴 연수비 총액의 50% 수준 지원(1인당 최대 95만원)

○ 건설업의 경우 지난 '21.3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(1주 40시간)을 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\*되었습니다. 앞으로 현장에서 잘 시행('21.9월)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(국토부)

\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개정('21.3) 및 시행('21.9) →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('21.9)

- 스포츠기업 경영자금융자 우선 배정\* 등을 통해 문화·스포츠 분야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.(문체부)

\* 전체 용자 자금의 10%를 주52시간제 시행 시기(5~49인 '21.7월~)에 맞춰 우선 배정

-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,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### 앞으로의 방향 및 기대효과

-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, 칠레 다음으로 길고,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입니다.
- \* 연간근로시간('19년, 상용1인 ↑, OECD) 우리나라(1,957), OECD 평균(1,626), 미국(1,786), 영국(1,516), 프랑스(1,418), 독일(1,334), 일본(1,669)
- 그리고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습니다.
-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,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.
-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어,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,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
## 참고 1

## 실태조사 결과

□ 개요: 5~49인 기업 대상(1,300개), 외부기관조사 → ①'20.12월 고용부 조사, ②'21.4월 고용부 - 중기부 -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조사

□ 주요결과

### ① 금년 7월 주52시간 준수 전망

(‘20.12) 법 준수 가능 90.2%, 불가능 9.8%

→ (‘21.4) 법 준수 가능 93.0%, 불가능 7.0%(2.8%p 감소)

### ② 주52시간 준수 및 준비 여부

(‘20.12) 준수 중 82.4%, 준비 중 8.5%, 준비못함 9.1%

→ (‘21.4) 준수 중 81.6%, 준비 중 10.7%, 준비못함 7.7%(1.4%p 감소)

### ③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비중

(‘20.12) 11.5% → (‘21.4월) 11.1% (0.4%p 감소)

### < 조사 결과 >

구 분		'21.4월	'20.12월
대 상		5~49인	5~49인
조사방식		표본조사 (1,300)	표본조사 (1,300)
주52시간 준수 전망	가 능	<b>93.0</b>	<b>90.2</b>
	제조	82.4	77.9
	비제조	96.2	94.0
	불가능	<b>7.0</b>	<b>9.8</b>
	제조	17.6	22.1
	비제조	3.8	6.0
주52시간 준수 여부	준수 중	<b>81.6</b>	<b>82.4</b>
	제조	61.3	62.5
	비제조	87.8	88.6
	준비 중	<b>10.7</b>	<b>8.5</b>
	제조	24.2	16.6
	비제조	6.5	6.0
	준비못함	<b>7.7</b>	<b>9.1</b>
	제조	14.6	20.9
	비제조	5.6	5.4
주52시간 초과자 유무	초과자無	<b>88.9</b>	<b>88.5</b>
	제조	72.9	71.4
	비제조	93.9	93.8
	초과자有	<b>11.1</b>	<b>11.5</b>
	제조	27.1	28.6
	비제조	6.1	6.2



## 참고 2

### 「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」 컨설팅 사례(5~299인)

사례	현장 상황 및 컨설팅 내용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수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, 발주처의 발주 주문 및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(주간근무자는 발주 물량이 많은 경우, 생산직(2조2교대제)은 상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)</li> <li>⇒ 교대제 개편(2조2교대 → 3조2교대) 및 이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함께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 도입</li> </ul>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 제조·판매업체로 설·추석 명절에는 명절 선물세트 제작을 위해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 초과 발생</li> <li>⇒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 도입(3~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검토 중)</li> </ul>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차량 전장품 제조업체로 고객 주문량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</li> <li>⇒ 생산직 근로자 20명 전원에 대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를 도입</li> </ul>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로 교대제(2조2교대제)를 운영중, 교대제 순환주기에 따라 특정한 주에 주52시간 초과 발생</li> <li>⇒ 탄력근로제(2주 단위)를 도입·활용하여 주52시간 초과 문제 해결</li> </ul>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닐하우스용 철제 파이프 제작 업체로, 비닐하우스 공급의 특성상 3~5월, 9월~11월이 성수기이며, 성수기에는 주52시간 초과 발생</li> <li>⇒ 추가 채용 필요인력(10명) 중 일부는 채용을 완료, 나머지 필요 인원은 지속 채용 노력 중, 올해 7월에 3~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예정</li> </ul>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레미콘 제조 업체로 현장 상황에 따라 주52시간 초과 발생</li> <li>⇒ 사무직, 생산직의 주중 및 주말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,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은 회사에서 보전 후 일자리함께하기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</li> </ul>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프레스 금형 설계 및 제조 업체로 원청의 주문 물량이 특정시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, 주문 물량에 따라 설계직은 1~2주, 생산직은 3~4일 정도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주52시간 초과 발생</li> <li>⇒ 설계직의 경우 탄력근로제(2주 단위)를 도입하고, 생산직은 설계부서의 작업 결과(도면 설계)에 연동되어 오전에는 대기시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</li> </ul>
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기물 처리 업체로, 폐기물 이동, 기계장비 조작, 운송 등의 업무는 계절적 성수기(3~5월, 9~11월)가 있고, 현장상황 등에 따라 대기시간이 변동</li> <li>⇒ 휴게·대기 시간을 실제 근무상황에 맞게 조정하고, 출퇴근 기록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, 3~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</li> </ul>
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용 진단키트 개발업체로, 연구개발직의 경우 일상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고, 영업직의 경우 주로 외부에서의 근무가 많아 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존재</li> <li>⇒ 연구개발직의 경우 재량근로시간제를, 영업직의 경우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직종별로 근로시간 대응</li> </ul>
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로, 시스템 운영 업무상 스케줄에 따라 일·주별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어 특정주에는 주52시간 초과하는 경우 발생</li> <li>⇒ 선택근로제(1개월 단위)를 도입하여 법정 근로시간 내로 운영</li> </ul>

◆ 제도적 보완 + 행·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으로 촘촘하게 지원

-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제도 보완 + 바뀐 제도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
- 주52시간제 준수 1:1 컨설팅 지원, 인건비 지원, 기타 정부사업 우대 등

□ (1:1 컨설팅 지원)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「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」을 꾸리고,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진단 및 1:1 컨설팅 제공

① ('19~'20년) 5~299인 기업 대상으로 현장지원 컨설팅 제공

- \* △지방관서 현장지원(감독관): ▲('19) 4,123개사, ▲('20) 1,496개사
- △전문가 컨설팅(노무사): ▲('19) 1,146개사, ▲('20) 2,600개사

② ('21년) 5~49인 현장지원 컨설팅, 50~299인 자율개선 프로그램 추진

- \* 5~49인: (지방관서) 목표 3,000, 진행(완료 포함) 2,227개사  
(전문가) 목표 1,400, 진행(완료 포함) 1,006개사<6.11. 현재>

- ▲ 5~29인: 전체(약 38.5만개, 고보 DB)에 컨설팅 신청 안내('21.1월)
- ▲ 30~49인: 전수조사(약 2.6만개, '21.1월)를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에 대해 우선 컨설팅 제공 중

- \*\* 50~299인: (지방관서) 목표 500, 진행(완료 포함) 279개사  
(전문가) 목표 500, 진행(완료 포함) 474개사<6.11. 현재>

□ (인건비 지원) 「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\*」('20년~), 「일자리함께하기 사업\*\*」('18.7월~)을 통해 인건비 등 재정지원

- \*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(50명 한도)  
→ (지원실적) ('20) 82개사, 1,669명(20억원), ('21) 6월 중 지급신청 접수(예산 46억원)
- \*\* 주52시간 준수하면서(52시간 초과→이내) 근로자(단시간 포함)가 증가한 기업에 증가 1인당 1~2년간 △신규인건비 월40~80만원 △재직자 월 최대40만원 지원  
→ ('18) 22개사, 1,175명(24억), ('19) 85개사, 5,547명(233억), ('20) 133개사, 12,056명(335억)  
( '21) 진행중(예산 389억)

□ (정부사업 우대) 「주52시간 조기단축 기업」, 「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」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\* (고용부 확인서 발급→각 부처 우대지원)

- \* 정부조달 가점, 정책금융 우대, 정부 포상 선정 우대 등
- \*\* 확인서 발급실적: [조기단축] ('18~'21.5) 267건, [관공서 공휴일] ('21.5) 134건

□ (업종별 지원: 관계부처 협조)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\* 마련·추진

○ '21.1월, 「주52시간제 안착 지원 관계부처 TF」를 구성하여, 범부처 차원에서 업종별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(1.28, 3.24, 6.10)

- \* △(주재) 고용부(노동정책실장) △(관계부처) 국조실, 기재부, 국토부, 산업부, 복지부, 과기정통부, 문체부, 농림부, 중기부, 교육부

### 1 탄력적 근로시간제

- (단위기간)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(기존에는 2주 이내, 3개월 이내 제도만 규정)
- (도입·운영요건)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,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, 근로자대표 “협의”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(기존 3개월 이내 제도에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, 근로자대표와의 “합의”가 있어야 변경 가능)
- (건강보호)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
  - \*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: ① 재난·사고의 예방과 수습 ②인명구조·안전확보 ③ 기타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+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
- (임금보전)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 신고 (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)

### 2 선택적 근로시간제

- (정산기간)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
- (건강보호)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
  - \*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: ① 재난·사고의 예방과 수습 ②인명구조·안전확보 ③ 기타 ①②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+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
- (임금보전)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

### 3 특별연장근로 인가

- (건강보호)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
  - \* 건강보호조치 고사: ① 특별연장 시간 주8시간 이내 or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or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②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(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, 검진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)

**참고 5**

**유연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개요**

유 형	내 용	적합 직무
<p><b>탄력적 근로시간제</b> (근로기준법 제51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위기간(2주~6개월)내 일이 많은 주(일)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(일)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(주40시간)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(성수기, 비수기)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</li> </ul>
<p><b>선택적 근로시간제</b> (근로기준법 제52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일정기간(1월 이내,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)의 단위</b>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,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시간(근로일)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, 사무관리(금융거래, 행정처리 등), 연구, 디자인, 설계 등</li> </ul>
<p><b>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</b> (근로기준법 제58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장 등 사유로 <b>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</b>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<b>영업직, A/S 업무, 출장 업무 등</b></li> </ul>
<p><b>재량 근로시간제</b> (근로기준법 제58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<b>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</b>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(간주)하는 제도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 업무</li> <li>사용자가 <b>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</b> 관하여 근로자에게 <b>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</b></li> <li>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상품, 신기술 연구개발, 인문사회과학, 자연과학 연구</li> <li>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</li> <li>신문,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, 편성 또는 편집</li> <li>의복, 실내장식, 공업제품,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</li> <li>방송 프로그램, 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</li> <li>회계, 법률사건, 납세, 법무, 노무 관리, 특허, 감정평가, 금융투자분석,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, 위촉을 받아 상담, 조언,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</li> </ol>
<p><b>특별연장근로 인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”</b>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행규칙에서 ①재난,재해, ②인명 보호 및 안전확보, ③기계고장 등 돌발상황, ④업무량 폭증, ⑤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인가사유로 규정</li> </ul>

## I. 국민의 인식

### □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 결과

↳ '18.8월, 전국 19세 이상 성인 1,515명 조사(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리서치에 의뢰)

○ (중요도) “일”과 “개인·가정생활”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

\* 일이 중요(5.1%) / 개인·가정생활이 중요(33.9%) / 둘 다 중요(60.9%)

○ (주52시간제)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평가

\* 잘 된 일이다(64.2%) / 잘못된 일이다(28.5%) / 잘 모르겠다(7.3%)

○ (도입 시기) 주52시간제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

\* 현행 계획보다 빨리 도입(25.2%) / 현행 계획대로 도입(39.8%) / 현행 계획보다 늦게 도입(23.8%) / 잘 모르겠다(11.2%)

### □ 근로시간 단축법(주52시간제)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

↳ '20.5월, 일반국민 15,880명 조사 (국회사무처)

○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” ‘사회문화환경분야’에서 ‘근로시간 단축법(주52시간제)’이 1위로 선정

### □ 주52시간제에 대한 직장인의 평가

↳ '20.12월, 직장인 300명 조사(대한상공회의소)

○ 만족 58.0% / 중립 30.7% / 불만족 11.3%

\* 만족하는 이유: 근무시간 감소(65.8%), 불필요한 업무 감소(18.4%), 업무집중도 증가(11.4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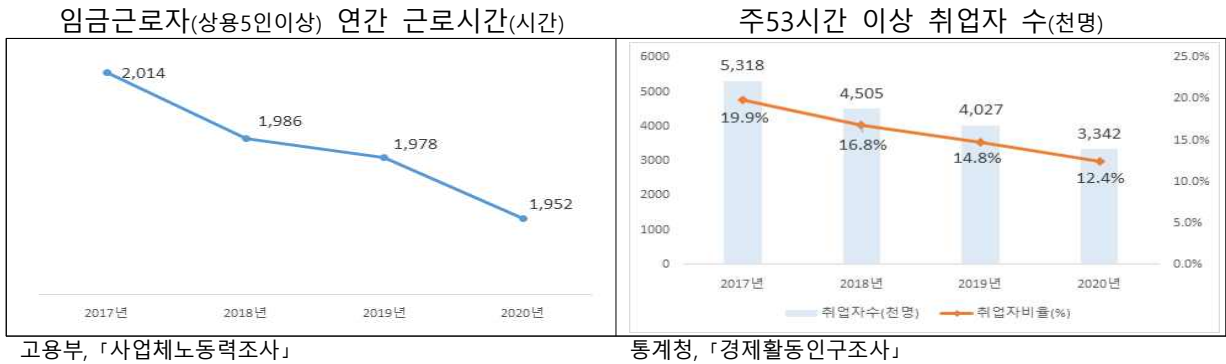
## II. 노동시간 단축(주52시간제) 이후의 변화

### □ 노동시간 감소

○ 주52시간제 도입('18.3.) 이후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고\*,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\*\*

\* '17) 2,014 → '18) 1,986 → '19) 1,978 → '20) 1,952(상용5인 ↑, 사업체노동력조사)

\*\* '17) 19.9% → '18) 16.8% → '19) 14.8% → '20) 12.4%(통계청 경찰조사)



□ **근로여건 및 근로시간 만족도 큰 폭 증가**(통계청 사회조사)

- '17년 대비 '19년,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 (27.7% → 32.3%, 4.6%p 증),
- 이 중 근로시간 만족도가 가장 높고, 가장 큰 폭으로 증가(28.0% → 34.5%, 6.5%p 증)
  - \*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: ('15) 25.3% → ('17) 27.7% → ('19) 32.3%
  - \*\* 세부 만족도('17/'19, %): [임금] 18.8/23.1, [근무환경] 30.5/34.2, [근로시간] 28.0/34.5



□ **기타 여가 활용 등**

- **(저녁있는 삶)** '20.1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(사람인, '20.1.23.) 65.5%가 '현재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다'라고 응답('17년 50.6%)
- **(여가 활성화)** 직장인의 60%가 '19년 한해 여가 등에서 변화를 체감했으며,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'주52시간제 시행' 언급 ('19.12. 이노션 월드와이드)
- **(수면시간 증가)**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수면시간이 증가(통계청 생활시간조사, '20.7월 발표) →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  - \* '19년 전국민(10세 이상) 기준, 수면·식사·개인 유지 등 필수시간은 5년 전보다 20분 증가한 11시간 34분이며, 수면시간은 13분 증가한 8시간 12분